

# 산재근로자 옹호관

산재근로자 옹호관 사무소(Office of the Advocate for Injured Workers)는 뉴욕주에서 업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를 돕기 위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상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보상 시스템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옹호관 사무소에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재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77) 632-4996**에 전화해서 **산재근로자 옹호관 사무소 (Advocate for Injured Workers' office)**를 요청하세요. 옹호관 사무소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즉시 답변드립니다.

- 청구서 제출 방법
- 사용되는 양식
- 보상 대상
- 분쟁 중인 청구
- 심리 및 이의 제기 권리
- 적시 제출
- 기록 보관
- 의료 처치에서 본인의 역할
- 가능한 의료급여
- 재활 및 사회사업
- 사망한 경우 해야 할 일

산재근로자 옹호관은 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노조, 고용주, 직업 안전/건강 그룹 및 산재근로자 지원 그룹을 방문하여 산재보상 시스템의 변동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Workers' Compensation Board  
The Advocate for Injured Workers**

328 State Street  
Schenectady, NY 12305  
(877) 632-4996  
advinjwkr@wcb.ny.gov

산재근로자 옹호관은 근로자, 노조, 고용주, COSH 그룹 및 산재근로자 지원 그룹을 위해 중요한 산재보상 문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교육 일정을 예약하세요.

## 근무 중에 다친 경우

직장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세요.

- 되도록 빨리 응급 처치나 기타 필요한 치료를 받으세요.
-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부상을 보고하세요.
- 부상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NYS Workers' Compensation Board(Board)에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 질병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되도록 빨리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된 후 2년 이내, 또는 질병을 알게 되거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들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상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청구서 제출

가장 빠른 방법: [wcb.ny.gov](http://wcb.ny.gov)를 방문해서, **File a Claim**을 클릭하고, **Employee Claim(근로자 청구서)(Form C-3) 웹버전**을 작성해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Form C-3작성에 관한 질문은 **(877) 632-4996**에 전화하시면 Board 담당자가 도와 드립니다.

## 청구에 대한 질문이 있으세요?

산재보상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세요.

# (877) 632-4996

전화하시면 다음 정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 성명
- WCB 케이스 번호 (이미 신청한 경우)
- 연락할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문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받은 모든 서신

## 의료급여

고용주의 보험회사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승인된 모든 의료급여를 지불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직장에서의 결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의료급여는 손실 임금에 대한 급여에 더해서 지불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목록은 Board의 웹사이트([wcb.ny.gov](http://wcb.ny.gov))에서 또는 의료 책임자 사무실(**800) 781-2362**)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공인된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 임금 급여

산재보상 손실 임금 급여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의료 문서를 바탕으로 지불됩니다. 급여는 부상 이전 52주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주급의 3분의 2가 지불되며 법에서 정한 최대 급여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대 급여 금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3월 31일에 노동청 커미셔너(Commissioner of Labor)가 보험감독관(Superintendent of Insurance)에게 보고하는 이전 연도의 뉴욕주 평균 주급에 기초합니다.\*

부상 시에 하나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다면 "이중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Board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중 고용"인 경우, 합산해서 평균 주급을 산정합니다.

\*신규 최대 급여가 법에 도입되더라도 산재근로자가 받는 급여율(부상 발생일에 따라 결정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사기는 Class E 중죄이며 최대 4년의 징역과 벌금 \$5,00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심해야 할 사항: 안전 우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뉴욕주 Workers' Compensation Board는 혜택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법 준수를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Boar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cb.ny.gov](http://wcb.ny.gov)를 방문하세요.